

#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은 방대하고 복잡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,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,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,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 민원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특히,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시민권익위원회는 민원

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이는 단순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,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